

## 투자권유준칙

구분	승인일	시행일	승인권자
제정	2016.11.21	2016.11.21	대표이사
전문개정	2019.04.19	2019.04.19	대표이사
개정	2020.03.02	2020.03.02	대표이사
개정	2020.05.25	2020.05.25	대표이사
전문개정	2021.04.12	2021.04.12	대표이사
전문개정	2022.02.23	2022.02.23	대표이사
전문개정	2025.09.01.	2025.09.01.	대표이사

르네상스자산운용(주)

## 투자권유준칙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투자권유준칙(이하 “준칙”이라 한다)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 제1항,「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법시행령”이라 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법시행규칙”이라 한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이라 한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금소법시행령”이라 한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이하 “금소법감독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르네상스자산운용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임직원과 투자권유대행인(이하 “임직원등”이라 한다)이 법상 일반투자자 및 금소법상 일반금융소비자(이하 “투자자”라 한다)에게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절차 및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준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 준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 법시행령, 법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금소법, 금소법시행령, 금소법감독규정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규정 등(이하 “관계법령 등”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투자성 상품”이란 금소법 제3조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투자일임계약 및 신탁계약(관리형신탁계약 및 투자성 없는 신탁계약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말하며, “대출성 상품”이란 금소법 제3조에 따른 대출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하 “금전 등”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장래에 금전 등 또는 그에 따른 이자 등 대가를 받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2. “투자권유”란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투자자문계약·투자일임계약·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3. “포트폴리오투자”란 투자위험 분산을 목적으로 둘 이상의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4. “적정성 원칙 대상상품”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
  - 가. 금소법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 각 목의 금융투자상품
  - 나. 금소법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 각 목의 대출성 상품
5. “투자자문”이라 함은 투자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종류, 종목, 취득 또는 처분, 취득 또는 처분의 방법, 수량, 가격 및 매매시기 등에 대한 판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6. “투자일임”이라 함은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 또는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7. “금융투자상품”이라 함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 시점에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서, 그 권리

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수 있는 금전등의 총액이 그 권리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등의 총액을 초과하게 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증권 및 장내외파생상품 등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전문금융소비자"라 함은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 소외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법 제9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서 정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9. "금융소비자"란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 체결의 권유를 하거나 청약에 받는 것에 관한 회사의 자문업무의 상대방인 전문금융소비자 또는 일반금융소비자를 말한다.

**제2조의2(주관부서)** ① 이 준칙의 주관부서는 마케팅담당부서로 한다.

② 주관부서는 이 준칙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법 제50조에 따라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3조(투자권유 및 판매 일반 원칙)** 임직원등은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 및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임직원등은 관계법령등을 준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합리적인 투자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투자에 따르는 위험 및 거래의 특성과 주요내용을 명확히 설명하여야 한다.
3. 임직원등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스스로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4. 임직원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가 이익을 얻거나 회사 또는 제삼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장 투자자 구분 등

**제4조(방문 목적 확인)** ① 임직원등은 투자자 방문 시 투자자의 방문 목적 및 투자권유 희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등은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투자권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투자자가 원하는 객관적인 정보만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일반금융소비자-전문금융소비자의 구분)** ①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해당 투자자가 일반금융소비자인지 전문금융소비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등은 법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일반금융소비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한다.
- ③ 주권상장법인이 회사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금융소비자로 본다. 단, 해당 법인이 전문금융소비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회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는 전문금융소비자로 본다.

## 제3장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판매

**제6조(투자권유를 받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보호의무)** ①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투자권유를 할 수 없음을 알려야 한다. 만일, 적정성원칙 대상 상품의 거래를 희망하는 투자자가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법령등에 따라 거래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을 특정하여 청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 투자권유 희망 및 투자자정보 제공 여부 확인서를 받아 판매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투자자가 그 확인서의 취지와 유의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1. 확인서의 취지: 투자자가 판매직원의 투자권유 없이 특정 상품에 대한 투자를 희망하는 경우 판매자는 금소법상 적합성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지하기 위해 사용
2. 유의사항: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투자자가 작성하는 경우 판매자는 금소법상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판매자의 관련 법 위반에 대해 소비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 다만, 설명의무의 경우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판매자에게 설명의무가 적용됨. 따라서 이 경우 향후 판매회사와 체결한 계약내용 등에 대한 피해발생으로 분쟁 또는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 투자자가 작성한 확인서로 인해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므로 그 확인서의 법적 의미와 그 위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서명여부 등 확인서 작성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함.

③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투자권유를 받지 않고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라도 원금손실 가능성, 투자에 따른 손익은 모두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등 투자에 수반되는 주요 유의사항을 알려야 한다.

④ 임직원등은 투자자에 대한 투자권유 여부와 상관없이 투자자가 법 제120조제1항에 따라 증권신고 효력이 발생한 증권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 전에 해당 투자설명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단, 법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투자자는 제외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투자자가 투자설명서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간이투자설명서 교부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투자자에게 투자설명서를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⑥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투자자문 결과에 따른 금융투자상품등의 구매를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요청하는 경우 해당 금융투자상품등을 판매하는 금융투자회사는 적합성원칙 및 설명의무와 설명서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적합성원칙, 설명의무 이행 및 설명서를 교부 받았음을 확인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2. 투자자문계약과 결합된 금융투자회사의 판매계약(자문결합계약)을 통해 투자자문 결과에 따른 금융투자상품등의 구매의사가 전달되는 경우

**제7조(적정성 원칙 대상 상품에 대한 특칙)** ①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적정성 원칙 대상 상품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그 투자자의 금융상품 취득 및 처분목적, 재산상황 및 취득 및 처분경험 등의 정보(이하 "투자자정보"라 한다)를 파악하여

야 한다.

- ② 임직원등은 제1항에 따라 파악한 투자자정보에 비추어 해당 적정성 원칙 대상 상품이 그 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적정성 원칙 대상 상품의 내용, 해당 투자에 따르는 위험 및 해당 투자가 투자자정보에 비추어 적정하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금소법시행령 제11조제6항에 따른 방법(서면고부, 우편, 전자우편, 전화, 팩스,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으로 투자자에게 알리고 서명(「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포함), 기명날인, 녹취 또는 금소법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전자적 수단(이하 '서명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적정성 판단의 기준은 제10조 및 제12조의 적합성판단을 위한 기준에 따른다.
- ③ 임직원등은 제2항의 경우에, 적정성 판단결과와 그 이유를 기재한 [별지 제2호] 적정성 판단보고서 및 금융상품에 관한 설명서를 서면 등으로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제4장 투자권유 희망 투자자에 대한 판매

### 제1절 투자자정보

- 제8조(투자자정보 파악 및 투자자성향 분석 등)** ① 임직원등은 투자권유를 희망하는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투자자의 투자자정보를 [별지 제3호]의 투자자정보 확인서에 따라 파악하고, 투자자로부터 서명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등은 제1항에 따라 확인한 투자자정보의 내용 및 [별지 제3호]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의 성향(이하 "투자자성향"이라 한다)을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 ③ 임직원등은 원칙적으로 투자자 본인으로부터 투자자정보를 파악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대리인이 그 자신과 투자자의 실명확인증표 및 위임장 등 대리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지참하는 경우 대리인으로부터 투자자 본인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위임의 범위에 투자자 정보 작성 권한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④ 임직원등은 투자권유를 희망하는 투자자라 하더라도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성향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투자권유를 할 수 없음을 알리고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로 간주하고 제3장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판매 절차를 따른다.
- ⑤ 임직원등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국제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위험이 높지 않은 금융투자상품만을 거래하는 투자자 및 환매조건부매매를 하는 투자자에 대하여도 [별지 제3호]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사용하여 투자자정보를 파악한다.
- ⑥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권유 여부와 상관없이 [별지 제4호] 장외파생상품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이용하여 투자자 정보를 파악하여야 한다.

- 제9조(투자자정보의 유효기간)** ① 임직원등은 투자자로부터 별도의 변경 요청이 없으면 투자자정보를 파악한 날로부터 24개월 동안 투자자정보가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 ②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제1항을 설명하고 투자자정보가 변경되면 회사에 변경내용을 통지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 ③ 임직원등은 회사가 이미 투자자정보를 알고 있는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정보 유효기간 경과 여부를 확인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투자자정보를 다시 파악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와 투자일임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투자자의 재무상태 및 투자목적 등 변경여부를, 금전신탁계약(투자자가 운용대상을 특정종목과 비중 등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특정금전신탁은 제외한다)이 체결된 경우에는 재무상태 등 변경여부를 연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하며, 매 분기 1회 이상 투자자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최신해 줄 것을 투자자에게 서면, 전자우편, 인터넷 또는 모바일시스템,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2절 투자권유

- 제10조(투자권유 절차)** ① 임직원등은 회사가 정한 [별지 제6호] 적합성판단 기준에 비추어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임직원등은 회사가 이미 투자자정보를 알고 있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기존 투자자성향과 그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투자권유를 하여야 한다.
- ③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보유 자산에 대한 위험회피 목적으로 투자하거나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등 해당 투자를 통하여 투자에 수반되는 위험을 낮추거나 회피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산정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투자권유를 할 수 있다.
- ④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본인에게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금융투자상품을 투자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투자권유 없이 투자자가 본인의 투자자성향보다 위험도가 높은 금융투자상품을 스스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투자성향에 적합하지 않은 투자성 상품 거래 확인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를 받아 판매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투자자성향과 금융투자상품의 위험수준을 확인시켜주고 해당 투자자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려주어야 하며, 특히 투자자가 그 확인서의 취지와 유의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1. 확인서의 취지: 투자자가 판매직원의 투자권유 없이 자신의 투자자성향보다 고위험의 상품(부적합 상품)에 투자한다는 확인서를 작성하는 경우 판매자는 금소법상 적합성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과 투자자성향에 부합하는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보다 더 큰 손실 위험이 있음을 고지하기 위하여 사용
  2. 유의사항: 투자자가 자신의 투자자성향보다 고위험의 상품을 투자하는 등 '투자성향에 적합하지 않은 투자성 상품 거래 확인서'에 서명하는 것은 향후 판매회사와 체결한 계약내용 등에 대한 피해 발생으로 분쟁 또는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 투자자가 작성한 확인서로 인해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므로 그 확인서의 법적 의미와 그 위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서명여부 등 확인서 작성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함
- ⑤ 임직원등은 다음 제1호의 투자자에게 제2호의 금융투자상품을 투자권유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의 올바른 투자판단을 유도하기 위하여 추천사유 및 유의사항 등을 기재한 [별지 제8호] 적합성

보고서를 계약체결 이전에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교부대상자: 신규투자자, 고령투자자 및 초고령투자자
2. 대상 상품: ELS, ELF, ELT, DLS, DLF, DLT

- ⑥ 임직원등은 금소법 제17조제2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한 결과 판매 상품이 적합하지 않거나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은 제외)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과정을 녹취하고 투자자가 요청하는 경우 녹취한 파일을 제공하여야 하며, 판매과정에서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11조(고령투자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보호기준)** ① 임직원등은 고령투자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제10조 제1항에 따른 [별지 제6호] 적합성판단 기준과 [별지 제9호] 강화된 고령투자자 보호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등은 65세 이상인 고령투자자를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은 제외한다)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과정을 녹취하고 투자자가 요청하는 경우 녹취한 파일을 제공하여야 하며, 판매과정에서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12조(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특칙)** ① 임직원등은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및 그 중개·주선 또는 대리의 상대방이 법에 따른 일반투자자인 경우에는 투자권유 여부와 상관없이 그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하려는 자산·부채 또는 계약 등(이하 "위험회피대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줄이기 위한 거래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거래를 할 수 있다.

1. 위험회피대상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할 예정일 것
2.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약정거래기간 중 해당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이 위험회피대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의 경우 임직원은 투자자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통하여 회피하려는 위험의 종류와 금액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임직원은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별지 제6호] 적합성판단 기준(장외파생상품)에 따라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투자권유시 유의사항)** ① 임직원등은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융투자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
2.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3. 투자자로부터 투자권유의 요청을 받지 아니하고 방문·전화 등 실시간 대화의 방법을 이용하는 행위. 다만, (1), (2)의 경우를 제외하고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 취득경로, 권유하려는 금융상품의 종류·내용 등을 금융소비자에게 미리 안내하고 해당 금융소비자가

투자권유를 받을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일반금융소비자의 경우 : 고난도금융투자상품, 고난도투자일임계약, 고난도금전신탁계약, 사모펀드,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2) 전문금융소비자의 경우 : 장외파생상품

4.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권유를 계속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각 목의 행위는 제외한다.

가.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후 1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나. 다른 종류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이 경우 다음의 각 금융투자상품 및 계약의 종류별로 서로 다른 종류의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 금융투자상품: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2)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가) 증권에 대한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나)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다)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3) 신탁계약

가) 법 제103조 제1항 제1호의 신탁재산에 대한 신탁계약

나) 법 제103조 제1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신탁재산에 대한 신탁계약

다. 나 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은 다른 유형의 금융투자상품으로 본다.

1) 기초자산의 종류가 다른 장외파생상품

2) 선도, 스왑, 옵션 등 금융투자상품의 구조가 다른 장외파생상품

5. 투자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면서 투자자가 요청하지 않은 다른 대출성 상품을 안내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6.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투자자에게 알리지 아니 하는 행위 또는 투자성 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알면서 그 사실을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고 그 금융상품의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7. 금융상품 내용의 일부에 대하여 비교대상 및 기준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금융상품과 비교하여 해당 금융상품이 우수하거나 유리하다고 알리는 행위

8. 자기 또는 제3자가 소유한 투자성 상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투자자에게 해당 투자성 상품의 취득을 권유하는 행위

9. 투자자가 법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에 위반되는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 매매, 그 밖의 거래를 권유하는 행위

10. 금소법 제17조를 적용받지 않고 권유하기 위해 투자자로부터 계약체결의 권유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서면 등으로 받는 행위

11. 관계법령 및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금전·물품·편익 등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 ② 임직원등은 투자자의 투자자성향 및 금융투자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기투자가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투자자에게 해당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장기투자를 권유할 수 있다.
- ③ 임직원등은 투자자의 투자자산이 특정 종목의 금융투자상품에만 편중되지 아니 하도록 분산하여 투자할 것을 권유할 수 있다.
- ④ 임직원등은 일반투자자에게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에 따른 계열회사 또는 계열회사에 준하는 회사(이하 “계열회사등”이라 한다)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펀드를 투자권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1. 그 집합투자업자가 회사와 계열회사 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2. 계열회사 등이 아닌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유사한 펀드를 함께 투자권유하여야 한다.

**제13조의2(확인서 징구 계약 관련 유의사항)** ① 회사는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금융투자상품 매매 또는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다는 투자자의 투자권유불원 의사표시는 마케팅담당부서장을 거쳐 준법감시인이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금융투자상품 또는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판매한 금융투자상품 현황 및 관련 민원 현황등(확인서 징구건수, 확인서 징구건 중 민원발생 건수 등)을 회사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주기적으로 파악 및 점검하고 내부보고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 제3절 설명의무

**제14조(설명 의무)** ①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성에 관한 구조와 성격,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조건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 등(이하 “투자설명사항”이라 한다)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설명한 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등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설명의무는 단순 확인방식으로 이행할 수 없으며,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자필 또는 음성으로 진술하는 방식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1. 투자자: 본인이 이해하는 상품의 특성, 최대 위험 등
  2. 임직원등: 투자자의 상품 이해수준, 설명내용 등
- ③ 설명서에는 투자자에게 설명한 내용과 실제 설명서의 내용이 같다는 사실에 대하여 금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한 사람의 서명(「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이 있어야 한다. 다만,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자동화 방식을 통해서만 서비스가 제공되는 계약에 대한 설명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임직원등은 제1항에 따라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복잡성 및 위험도 등 상품특성과 투자자의 투자경험 및 인식능력 등 투자자측면을 고려하여 설명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 ⑤ 임직원등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주요 손익구조 및 손실 위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계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임직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투자자에게 설명에 필요한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때, 집합투자증권의 발행인이 작성한 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제공한 경우 해당 내용을 제외할 수 있다.
  1.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투자자가 서면,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설명서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2.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경우. 다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3. 기본계약을 동일한 내용으로 갱신하는 경우 또는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계속·반복적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
- ⑦ 임직원등은 금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설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1. 서면교부
  2. 우편 또는 전자우편
  3.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 ⑧ 설명서에는 투자자에게 설명한 내용과 실제 설명서의 내용이 같다는 사실에 대해 금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한 사람의 서명(「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이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계약에 대한 설명서는 제외한다.
  1. 예금성 상품 또는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
  2.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자동화 방식을 통해서만 서비스가 제공되는 계약
- ⑨ 임직원등은 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함에 있어서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⑩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추후에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문의할 수 있도록 자신의 성명, 직책, 연락처 등의 이용방법을 알려야 한다.

**제15조(외화증권 등에 대한 설명의무 특칙)** ①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외화증권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제14조 제1항에 따른 설명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시장상황 등의 특징
  2. 투자에 따른 일반적 위험 외에 환율변동 위험, 해당국가의 거래제도·세제 등 제도의 차이
  3. 투자자가 직접 환위험 해지를 하는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해지 비율 미조정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 ②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투자권유 하는 경우에는 제14조 제1항에 따른 설명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여건 및 시장현황에 따른 위험
  2. 집합투자기구 투자에 따른 일반적 위험 외에 환율변동 위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환위험 해지

여부, 환헤지 비율의 최대치가 설정된 목표 환헤지비율, 환헤지 대상 통화, 주된 환헤지 수단 및 방법

3. 환위험 헤지가 모든 환율 변동 위험을 제거하지는 못하며, 투자자가 직접 환위험 헤지를 하는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헤지 비율 미조정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4. 모자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투자자의 요청에 따라 환위험 헤지를 하는 자펀드와 환위험 헤지를 하지 않는 자펀드간의 판매비율 조절을 통하여 환위험 헤지 비율을 달리(예: 20%, 40%, 60%)하여 판매할 수 있다는 사실
- ③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신탁계약을 투자권유하는 경우에는 제14조 제1항에 따른 설명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역 및 투자대상 자산별 투자비율
  2. 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시장상황 등의 특징
  3. 신탁계약 체결에 따른 일반적 위험 외에 환율변동 위험, 해당 신탁계약의 환위험 헤지 여부 및 헤지 정도
  4. 과거의 환율변동추이가 미래의 환율변동을 전부 예측하지는 못하며, 통화간 상관관계는 미래에 변동할 수 있다는 사실
  5. 환위험 헤지가 모든 환율 변동 위험을 제거하지는 못하며, 투자자가 직접 환위험 헤지를 하는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헤지 비율 미조정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제15조의2(조건부자본증권에 대한 설명의무 특칙)**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조건부자본증권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제14조 제1항에 따른 설명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원리금이 전액 상각되거나 보통주로 전환되는 특약이 있다는 사실
2. 상각·전환의 사유 및 효과
3. (이자지급제한에 관한 특약이 있는 경우) 특정한 사유 발생시 또는 발행인의 재량에 따라 이자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
4. (만기가 장기이거나 발행인의 임의만기연장 특약이 있는 경우) 장기간 현금화가 불가능하거나 유동성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
5. (중도상환 조건이 있는 경우) 만기가 짧아질 수 있다는 사실
6. 사채의 순위

## 제5장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 분류

**제16조(금융투자상품의 위험등급 산정)** ① 회사는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 및[별지 제5호] 「투자성 상품의 위험등급 산정기준」에 따라 위험등급을 산정한다.

- ② 위험등급은 최소 6단계 이상으로 구분하고, 1등급을 가장 높은 위험으로 한다. 다만,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위험등급 산정은 [별지 제5호]에 따라 별도로 기준을 정한다.

## 제6장 그 밖의 투자권유 유의사항

**제17조(계약서류의 교부)** ① 임직원등은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소법 제23조 및 금소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계약서류를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다음의 방법 중 특정 방법으로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방법으로 제공해야 한다.

1. 서면교부
2. 우편 또는 전자우편
3.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서류를 전자우편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투자자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통해 계약서류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소프트웨어, 안내자료 등을 제공해야 한다.

③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서류를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서류가 위조·변조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서류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계약서류가 금소법 시행령 제22조 및 내부통제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된다는 사실을 해당 계약서류에 적어야 한다.

**제17조의2(청약의 철회)** ① 회사는 투자자가 투자성 상품 중 청약철회가 가능한 대상상품에 대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7일(회사와 투자자간에 해당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내에 [별지 제10호] 청약철회요청서를 작성하여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금소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의 방법(이하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에서 '서면등'이라 한다)으로 청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이를 수락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경우 투자자가 예약한 금전 등(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제17조의2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을 지체 없이 운용하는데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금소법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서류를 제공 받은 날
2. (금소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우) 계약 체결일

② 청약철회가 가능한 투자성 상품의 경우, 청약의 철회는 투자자가 서면등을 발송한때 효력이 발생한다. 투자자가 서면 등을 발송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발송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한다.

③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받은 금전등을 반환하고,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상품의 계약에서 정해진 연체이자율을 금전·재화·용역의 대금에 곱한 금액을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④ 고난도투자일임계약 또는 고난도금전신탁계약에 대하여 청약 철회 기간을 계산할 때 숙려기간을 제외하고 계산한다.

⑤ 회사는 청약이 철회된 경우 투자자에 대하여 청약의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 등 금전지급을 청구할 수 없으며, 청약의 철회에 대한 특약으로서 투자자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로 한다.

⑥ 회사는 청약이 철회된 경우 투자자에 대하여 청약의 철회에 따라 금전(이자 및 수수료를 포함한다) 반환하는 경우에는 투자자가 지정하는 입금계좌로 입금해야 한다.

**제17조의3(위법 계약의 해지)** ① 회사는 금소법 제17조(적합성의 원칙)제3항, 제18조(적정성의 원칙)제2항, 제19조(설명 의무)제1항·제3항, 제20조(불공정영업행위 금지)제1항 또는 제21조(부당권유행위

금지)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투자자와 체결한 경우, 투자자가 [별지 제11호] 위법계약 해지요구서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수락하여야 한다.

1. 계약의 형태가 계속적인 것(법 제9조제22항에 따른 집합투자규약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적용기간을 포함한다.)
  2. 계약기간 종료 전 투자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그 계약에 따라 투자자의 재산에 불이익이 발생할 것
- ② 투자자가 제1항에 따른 위법한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한다)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투자자의 해지를 요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 위법계약 해지 요구 관련 통지서 등으로 수락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 ③ 회사가 다음 각 호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없이 투자자의 계약 해지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투자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반사실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시한 경우
  2. 계약 체결 당시에는 위반사항이 없었으나 투자자가 계약 체결 이후의 사정변경에 따라 위반사항을 주장하는 경우
  3. 투자자의 동의를 받아 위반사항을 시정된 경우
  4. 계약의 해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 위반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객관적·합리적인 근거자료를 투자자에게 제시한 경우. 다만, 10일 이내에 투자자에 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 가. 계약의 해지를 요구한 투자자의 연락처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없거나 이와 유사한 사유로 금소법 제47조제1항 후단에 따른 통지기간 내 연락이 곤란한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 지체 없이 알릴 것
    - 나. 금소법 위반사실 관련 자료 확인을 이유로 투자자의 동의를 받아 금소법 제47조제1항 후단에 따른 통지기한을 연장한 경우: 연장된 기한까지 알릴 것
- ④ 회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수수료, 위약금 등의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제18조(손실보전 등의 금지)** 임직원등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103조 제3항(신호후생환연금신탁, 연금신탁, 퇴직일시금신탁)에 따라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을 하는 경우, 그 밖에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2.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
3.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4.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

**제19조(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금지행위)** ① (과당매매의 권유 금지) 임직원등은 투자자의 투

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반투자자에게 빈번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 또는 과도한 규모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특정거래가 빈번한 거래인지 또는 과도한 거래인지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판단한다.

1.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의 총액
  2. 투자자의 재산상태 및 투자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3. 투자자의 투자지식이나 경험에 비추어 해당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
  4. 개별 매매거래시 권유내용의 타당성 여부
- ② (자기매매등을 위한 권유 금지) 임직원은 자기 또는 제3자가 소유한 투자성 상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투자자에게 해당 투자성 상품의 취득을 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부당한 권유금지) 임직원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당한 권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이를 투자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매수나 매도를 권유하여 해당 금융투자상품을 매도하거나 매수하는 행위
  2. 투자자에게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매매를 권유하는 행위
  3. 법 제55조(손실보전 등의 금지) 및 법 제71조(불건전영업행위의 금지)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외파생상품거래, 신탁계약 또는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는 행위
  4. 신뢰할 만한 정보·이론 또는 논리적인 분석·추론 및 예측 등 적절하고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나 특정한 매매전략·기법 또는 특정한 재산운용배분의 전략·기법을 채택하도록 투자자에게 권유하는 행위
  5. 해당 영업에서 발생하는 통상적인 이해가 아닌 다른 특별한 사유(회사의 인수계약 체결, 지급보증의 제공, 대출채권의 보유, 계열회사 관계 또는 회사가 수행중인 기업인수 및 합병 업무대상,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보유 등)로 그 금융투자상품의 가격이나 매매와 중대한 이해관계를 갖게 되는 경우에 그 내용을 사전에 투자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 가. 투자자가 매매권유당시에 해당 이해관계를 알고 있었거나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다만, 조사분석자료에 따른 매매권유의 경우는 제외한다.
    - 나. 매매를 권유한 임직원이 그 이해관계를 알지 못한 경우. 다만, 회사가 그 이해관계를 알리지 아니하고 임직원으로 하여금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한 경우는 제외한다.
    - 다. 해당 매매권유가 투자자에 대한 최선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만, 조사분석자료에 따른 매매권유의 경우는 제외한다.
  6.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는 대가로 권유대상 금융투자상품의 발행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등 권유대상 금융투자상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재산적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
  7.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와 관련하여 회사가 받는 판매보수 또는 판매수수료가 회사가 취급하는 유사한 다른 집합투자증권의 그것보다 높다는 이유로 투자자를 상대로 특정 집합투자증권의 판매

에 차별적인 판매촉진노력을 하는 행위. 다만, 투자자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볼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어 판매대상을 단일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증권으로 한정하거나 차별적인 판매촉진 노력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특정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와 관련하여 투자자를 상대로 예상수익률의 보장, 예상수익률의 확정적인 단언 또는 이를 암시하는 표현, 실적배당상품의 본질에 반하는 주장이나 설명 등을 하는 행위
9. 매매거래에 관한 경험부족 등으로 임직원등의 투자권유에 크게 의존하는 투자자에게 신용공여를 통한 매매거래나 과다하거나 투기적인 거래, 선물·옵션 등 위험성이 높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를 권유하는 행위

**제20조(투자자문 및 투자일임 업무 시 준수사항)** ① 임직원등은 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자료 등의 서식으로 작성한 투자자문 또는 투자일임계약 권유문서를 말한다(를 미리 투자자에게 교부한다).

1. 투자자문의 범위 및 제공방법 또는 투자일임의 범위 및 투자대상 금융투자상품 등
2.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수행에 관하여 회사가 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기준 및 절차
3.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실제로 수행하는 임직원의 성명 및 주요경력(로보어드바이저의 경우, 투자자문 또는 투자일임이 로보어드바이저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사실[별지 제13호])
4. 투자자와의 이해상충방지를 위하여 회사가 정한 기준 및 절차
5.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과 관련하여 투자결과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및 투자자가 부담하는 책임에 관한 사항
6. 수수료에 관한 사항
7. 투자실적의 평가 및 투자결과를 투자자에게 통보하는 방법(투자일임계약의 경우에 한한다)
8. 투자자는 투자일임재산의 운용방법을 변경하거나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
9. 임원 및 대주주에 관한 사항
10. 투자일임계약인 경우에는 투자자가 계약개시 시점에서 소유할 투자일임재산의 형태와 계약종료 시점에서 소유하게 되는 투자일임재산의 형태
11.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할 때 적용되는 투자방법에 관한 사항
12. 법 제99조 제1항에 따른 투자일임보고서의 작성대상 기간
13. 그 밖에 투자자가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금융투자업규정 제4-73조 각 호의 사항

② 임직원등은 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금소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투자자에게 교부하는 계약서류에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재내용은 제1항에 따라 교부한 서면자료에 기재된 내용과 달라서는 아니 된다.

1. 제1항의 각 호의 사항
2. 계약당사자에 관한 사항
3. 계약기간 및 계약일자
4. 계약변경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5. 투자일임재산이 예탁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그 밖의 금융기관의 명칭 및 영업소명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투자일임보고서를 작성하여 3개월마다 1회 이상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에게 교부한다.

1. 투자일임재산의 운용현황
2. 투자일임재산 중 특정 자산을 그 투자일임업자의 고유재산과 거래한 실적이 있는 경우 그 거래시기·거래실적 및 잔액
3. 운용경과의 개요 및 손익현황
4. 투자일임재산의 매매일자, 매매가격, 위탁수수료 및 각종 세금 등 운용현황
5. 투자일임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잔액현황, 취득가액, 시가 및 평가손익
6. 투자일임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및 금액
7.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투자업규정 제4-78조에 해당하는 사항

④ 회사는 투자자문 또는 투자일임계약과 관련한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을 수행한다.

1. 회사가 투자자로부터 투자자문 또는 투자일임을 받는 경우에는 계약개시일로부터 매 분기 1회 이상 투자자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여부를 확인하고 그 변경된 내용에 부합하도록 투자자문 또는 투자일임업을 수행한다.
2. 투자자문 또는 투자일임업무의 담당자를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투자자와 협의한다. 다만, 투자자문 또는 투자일임계약에서 부득이하다고 기재한 경우를 제외한다.
3. 고의로 계약자의 신상을 회사 외부로 유출시켜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투자일임의 경우 투자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에 대하여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을 수 있다.

**제21조(투자자문 및 투자일임 업무 시 금지행위)** ① 임직원등은 투자자와 투자자문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후 관련법규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회사가 다른 금융투자업, 그 밖의 금융업을 겸영하는 경우로서 그 겸영과 관련된 해당 법령에서 제1호 및 제2호의 행위를 금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 투자자로부터 금전 또는 증권, 그 밖의 재산의 보관 또는 위탁을 받는 행위
2. 투자자에게 금전 또는 증권, 그 밖의 재산을 대여하거나 투자자에 대한 제삼자의 금전 또는 증권, 그 밖의 재산의 대여를 중개, 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
3. 투자권유자문인력 또는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수행하게 하는 행위
4.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5. 투자자문에 응하거나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금융투자상품등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 또는 매매 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등을 자기의 재산으로 매매하거나 제삼자에게 매매를 권유하는 행위
6.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운용방법의 변경 또는 계약의 해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행위

7. 회사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투자일임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
8. 회사 또는 관계인수인이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인수업무를 담당한 법인의 특정증권등에 대하여 인위적인 시세를 형성하기 위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그 특정증권등을 매매하는 행위
9. 특정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회사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10. 투자일임재산으로 회사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일임재산, 집합투자재산 또는 신탁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11. 투자일임재산으로 회사 또는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12. 투자자의 동의 없이 투자일임재산으로 회사 또는 그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13. 투자일임재산을 각각의 투자자별로 운용하지 아니하고 여러 투자자의 자산을 집합하여 운용하는 행위
14. 투자자로부터 다음 각목의 행위를 위임받는 행위
  - 가. 투자일임재산을 위탁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그 밖의 금융기관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 나. 투자일임재산을 위탁하거나 인출하는 행위
  - 다. 투자일임재산에 속하는 증권의 의결권, 그 밖의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
15. 기타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사항

**제22조(투자일임 및 금전신탁에 대한 특칙)** 투자일임 및 금전신탁(투자자가 운용대상을 특정종목과 비중 등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특정금전신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 또는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임직원등은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투자연령, 투자위험 감수능력, 소득수준 및 금융자산의 비중 등의 정보를 [별지 제3호] 투자자정보확인서에 따라 조사하여 투자자를 유형화하고 투자자로부터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투자자가 투자자를 유형화하기 위한 조사를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조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문투자자가 자기의 투자 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2. 임직원등은 제1호에 따라 확인한 투자자정보의 내용 및 [별지 제3호]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의 유형(이하 “투자자유형”이라 한다)을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3. 회사는 하나 이상의 자산배분유형군을 마련하여야 하며, 하나의 자산배분유형군은 둘 이상의 세부자산배분유형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4. 회사는 제1호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 유형에 적합한 세부자산배분유형을 정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5. 임직원등은 투자일임·금전신탁계약 체결 전에 투자자에게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 가. 세부자산배분유형간 구분 기준, 차이점 및 예상 위험수준에 관한 사항
  - 나. 분산투자규정이 없을 수 있어 수익률의 변동성이 집합투자기구 등에 비해 더 커질 수 있다는 사실
  - 다. 제1호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 유형 위험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투자일임·금전신탁

재산의 운용에 대해 투자자가 개입할 수 있다는 사실  
 라. 성과보수를 수취하는 경우 성과보수 수취요건 및 성과보수로 인해 발생 가능한 잠재 위험에 관한 사항

- 제23조(로보어드바이저에 대한 특칙)** ① 투자자에게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하는 투자자문·일임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로보어드바이저의 의미와 해당 로보어드바이저의 투자전략 및 위험요인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투자자의 이해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② 투자자가 온라인으로 로보어드바이저 자문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금융투자회사는 로보어드바이저의 주요 특성 및 유의사항 등을 투자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 ③ 로보어드바이저 알고리즘의 중대한 변경 등 주요사항 변경 시에는 투자자에게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 제24조(판매 관련 자료의 보존 및 투자자 제공)** ① 회사는 판매 관련 자료를 그 종류별로 금융투자업 규정 별표 12에서 정한 최소보존기간 이상 서면, 전자자료, 그 밖에 마이크로필름 등의 형태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금융상품판매업등의 업무와 관련한 자료(세부내용은 금소법시행령 제26조 참조)를 10년(계약 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 기간 동안) 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 ③ 회사는 투자자로부터 판매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 해당 자료를 6영업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공가능일자를 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회사는 투자자로부터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의 목적으로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 포함)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6영업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영업일 이내에 열람할 수 없는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투자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 제25조(국내채권의 장외거래 관련 특칙)** ①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채권의 장외거래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설명시 채권의 거래가격 및 거래비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설명일 전영업일 기준 민평금리 및 민평금리로 평가한 가격
  2. 채권의 매매수익률, 매매단가
  3. 민평금리로 평가한 가격 및 매매단가의 차이 및 비율
  4. 채권 투자 특징으로서 채권 수익률과 투자 위험의 관계에 대한 투자자 유의사항
- ② 임직원등은 채권의 장외거래 계약 체결전에 투자자에게 채권의 투자위험 및 중도매도 관련 불이익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고 투자자의 이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채권을 만기가 아닌 시점에 매도하는 경우 시장금리의 변동으로 인해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시장금리 변동에 따른 채권 가격의 변화와 관련된 예시 자료를 도표·그래프 등으로 제공)

- 2. 만기가 긴 채권일수록 시장금리의 변화에 채권 가격이 더욱 민감하게 변동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
  - 3. 고객이 매도가능한 채권의 종목은 증권사 및 시장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증권사는 고객이 매수한 채권에 대해 중도매도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
  - 4. 중도매도가 불가능한 경우 만기까지 채권을 보유할 수 있으므로 투자예정기간과 채권만기의 일치 여부를 반드시 감안하여 투자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
- ③ 임직원등은 과거에 투자권유하였으나 현재는 투자권유하지 않는 채권 중 투자자 보호 사유가 있는 채권에 대하여 해당 채권의 상세 정보 및 투자권유를 하지 않는 사유를 해당 채권 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2022. 2. 23)

제1조(시행일) 이 준칙은 2022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준칙 시행과 동시에 종전 사규 「투자자문업 모범규준」과 「투자일임업 모범규준」은 폐지한다.

부칙(2025. 9. 1)

제1조(시행일) 이 준칙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투자권유 희망 및 투자자정보 제공 여부 확인서**

- 본 확인서는 투자자가 투자성 상품을 가입하는 경우 투자 권유 희망 및 투자자정보 제공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투자자는 아래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읽고 필요한 확인 절차를 거쳐주시기 바랍니다.
- 동 확인서는 향후 분쟁 또는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 귀하의 권리구제에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의사항**

1. 귀하께서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거나 투자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당사는 **적합성 원칙\* 준수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 **적합성 원칙(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 : 투자자의 재산상황, 금융상품 취득·처분 경험 등 정보를 파악하고, 투자자에게 부적합한 금융상품의 계약 체결 권유를 금지**
2. 귀하께서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거나 설명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 당사는 **설명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 **설명 의무(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 금융상품의 중요사항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투자자 확인사항**

상기 기재한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을 듣고 투자권유 여부를 결정하신 경우 아래 각 항목의 해당사항에 체크한 후 밑줄 친 곳에 똑같이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시기 바랍니다.

1. 투자권유 희망 여부

(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음 )

2. 투자자정보 제공 여부

( 투자자정보를 제공함 )       (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음 )

※ 일임·(비지정형)신탁계약 및 적정성 원칙 대상 상품 거래 희망 시에는 선택불가

-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거나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객의 별도 의사가 있기 전까지 회사가 투자 권유를 할 수 없습니다.**
- 투자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 손익에 대한 책임은 모두 고객에게 귀속됩니다.



	3) 널리 알려진 금융투자상품 (주식, 채권 및 펀드 등)의 구조 및 위험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음 4) 파생상품을 포함한 대부분의 금융투자상품의 구조 및 위험을 이해하고 있음	
감내할 수 있는 손실 수준	14. 투자위험에 대한 태도 1) 무슨 일이 있어도 투자 원금은 보전되어야 함 2) 투자원금에서 최소한의 손실만을 감수할 수 있음 3) 투자원금 중 일부의 손실을 감수할 수 있음 4) 기대수익이 높다면 위험이 높아도 상관하지 않음	
	15. 기대이익 수준 1) 원금기준 +1% 이하 2) 원금기준 +5% 이하 3) 원금기준 +10% 이하 4) 원금기준 +10% 초과	
	16. 손실감내 수준 1) 원금기준 -1% 이하 2) 원금기준 -5% 이하 3) 원금기준 -10% 이하 4) 원금기준 -10% 초과	
	17. 손실 발생시 원금회복을 위해 감내할 수 있는 기간 1) 0~6개월 2) 6개월~1년 3) 1년~3년 4) 3년 이상	
운용계획	18. 금융투자상품 운용계획 1) 축소 예정 2) 현행수준 유지 예정 3) 확대 예정	
투자기간	19. 일반적 투자기간(계약기간) 1) 6개월 미만 2) 6개월 이상 ~ 1년 미만 3) 1년 이상 ~ 2년 미만 4) 2년 이상 ~ 3년 미만 5) 3년 이상	
가족관계	20. 가족관계 <input type="checkbox"/> 부양가족 있음 <input type="checkbox"/> 부양가족 없음	
과세형태	21. 과세형태 <input type="checkbox"/> 종합과세대상 <input type="checkbox"/> 일반과세대상	
연령	22. 연령 <input type="checkbox"/> 19세 이하 <input type="checkbox"/> 20세~30세 <input type="checkbox"/> 31세~40세 <input type="checkbox"/> 41세~65세 <input type="checkbox"/> 65세 이상	
취약투자 여부	23. 취약투자자 해당 여부 Yes <input type="checkbox"/> No <input type="checkbox"/> - 고령투자자 - 미성년자 - 정상적 판단에 장애가 있는 투자자 - 금융투자상품 투자 무경험자 - 문맹자 등	

[현재 투자자금 성향]

\*아래 정보는 현재 투자하려고 하시는 자금의 성격을 최대한 반영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분류	질문	선택
현재 투자목적	1. 투자목적 1) 기존 보유자산에 대한 위험 헤지 목적 2) 채권이자-주식배당 정도의 수익 실현 목적 3) 시장(예:주가지수) 가격 변동 추이와 비슷한 수준의 수익 실현 4) 적극적 매매를 통한 수익 실현 5) 적극적 매매를 통한 수익을 원하며 원금을 초과하는 손실위험도 감내 가능	
	2. 투자수익-위험에 대한 태도 1) 투자 수익을 고려하나 원금 보존이 더 중요 2) 원금 보존을 고려하나 투자 수익이 더 중요 3) 손실 위험이 있더라도 투자 수익이 중요 3. 투자수익-위험에 대한 태도 1) ±5% 이하 2) ±10% 이하 3) ±15% 이하 4) ±25% 이하 5) ±25% 초과 4. 금번에 투자하려는 자금은 원금보존을 추구하는 자금입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현재 투자하고자하는 상품	5. 투자하고자 하는 상품명 : ( )	
현재 투자하는 자금의 투자 예정기간	6. 투자예정 기간 1) 6개월 미만 2) 6개월 이상 ~ 1년 미만 3) 1년 이상 ~ 2년 미만 4) 2년 이상 ~ 3년 미만 5) 3년 이상	
현재 투자자금의 규모	7. 총 금융자산 중 현재 투자하려는 자산의 비중 1) 40% 초과 2) 30% 초과 ~ 40% 이하 3) 20% 초과~ 30% 이하 4) 10% 초과~ 20% 이하 5) 10% 이하	

[투자자 성향 분류]

투자자성향	투자자성향 점수화	비고
<input type="checkbox"/> 공격투자형	60점 초과	투자자정보항목에 대하여 투자자가 선택한 번호가 각 항목별로 취득한 투자자의 점수가 되고, 각 점수를 총합하여 투자자 성향을 점수화 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주식선호형	60점 이하	
<input type="checkbox"/> 주식펀드선호형	55점 이하	
<input type="checkbox"/> 고수익채권형	50점 이하	
<input type="checkbox"/> 혼합투자형	45점 이하	

<input type="checkbox"/> 안정투자선호형	40점 이하	[최저점수:20점, 최고점수:89점]
<input type="checkbox"/> 이자소득형	35점 이하	

투자자 확인사항

본인은 귀사에 제공한 투자자정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합니다.

1. 귀사에 제공한 투자자정보는 본인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정확히 알려드린 것입니다.
2. 향후 24개월 동안에는 본인의 투자자정보가 변경되지 않는 것으로 귀사가 간주한다는 점을 설명 받았습니다.
3. 본인의 투자자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귀사에 통지하여야 귀사가 본인에게 적합한 투자권유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 받았습니다.

• 일자 : \_\_\_\_\_ • 고객의 성명 : \_\_\_\_\_ 서명/인  
(대리인 거래시 대리인 성명 : \_\_\_\_\_ 서명/인)





**적합성 판단기준(투자일임)**

구 분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안정형					가능
안정추구형				가능	가능
위험중립형			가능	가능	가능
적극투자형		가능	가능	가능	가능
공격투자형	가능	가능	가능	가능	가능

**[별지 제4호]**

**장외파생상품 투자자정보 확인서(법인·개인사업자)**

- 관련 법률에 따라 회사가 일반투자자인 투자자에게 장외 파생상품거래를 권유하려는 때에는, 그 전에 면담, 질문 등을 통하여 투자자의 정보를 파악하고 투자자의 서명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확인 받은 내용을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합니다.
- 파악한 정보는 투자자에게 적절한 파생상품을 권유하는 데 활용합니다.
- 또한 일반투자자가 회사의 권유 없이 스스로의 결정으로 "적정성 원칙 대상상품"을 거래하려는 경우에도 면담, 질문 등을 통하여 그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투자(거래)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해당 파생상품이 그 투자자에게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리고, 투자자로부터 서면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도록 관련 법률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최대한 투자자의 상황에 부합하거나 가장 가까운 항목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자께서 잘못된 답변을 하거나 불성실한 답변을 하시면 회사는 투자자와의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거절하거나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추천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투자자께서 부담하는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유형	상장기업 <input type="checkbox"/>	비상장기업 <input type="checkbox"/>	개인사업자 <input type="checkbox"/>
-------	-------------------------------	--------------------------------	--------------------------------

**I. 투자자의 재무현황**

1. 재무현황
 

자산 총계 :	외화자산 총계 :
부채 총계 :	외화부채 총계 :
연간 수출총액 :	연간 수입총액 :
금융투자자산 보유금액 :	
2. 현재 보유하고 있는 파생상품 거래의 종류 및 약정잔액[모든 금융기관 포함]

**II. 거래의 목적**

거래목적	예	아니오
투자자께서는 위험회피(헤지) 목적으로 아래 거래를 체결하고자 합니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II. 거래하고자 하는 장외파생상품의 종류**

1. 거래하고자 하는 기초자산의 종류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화	이자율	상품	기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위험회피(헤지)하고자 하는 해당 기초자산의 보유 내역 및 금액, 보유 경위 등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V. 상품에 대한 이해 수준**

<b>1. 장외파생상품 최고 의사결정자*</b>			
소속부서 :	직 급 :	성 명 :	
관련경력 :	관련 자격 :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지식 보유 정도	상 : (전문가 수준)	중 :	하 :
<b>2. 장외파생상품 거래체결 담당자*</b>			
소속부서 :	직 급 :	성 명 :	
관련경력 :	관련 자격 :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지식 보유 정도	상 : (전문가 수준)	중 :	하 :
3. 투자자의 대표자 및 위에서 언급한 임(직)원 들이 모두 거래하고자 하는 장외 파생상품거래의 조건과 그에 수반하는 위험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4. 투자자께서 거래하고자 하는 장외파생상품이 투자자께서 회피하고자 하는 위험의 속성 및 규모에 비추어 적합합니까?			
예 :	아니오 :		

\* 투자자가 법인 등 단체인 경우 대표자 이외의 임직원이 회사와 거래를 실행하는 경우로서 별도 양식으로 그 임직

원의 인적 사항과 거래 인감(서명감)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V. 위험관리능력

위험관리능력	예	아니오	비 고
1. 장외파생상품 리스크관리 전담 조직 및 인력 보유 여부			조직명: 인원수:
2. 장외파생상품 위험관리를 위한 규정, 내부통제절차 및 업무절차 보유 여부			규정명:
3. 장외파생상품 위험관리를 위한 별도의 전산시스템 보유 여부			전산시스템명 :

VI. 금융거래수준

투자자께서 지금까지 거래한 경험이 있는 장외파생상품의 종류 및 거래 규모 등에 대하여 다음의 표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품 종류	경험유무	건 수	거래연수	거래규모*
선물환(FX Forward)				
FX 스왑(FX Swap)/통화스왑(Currency Swap)				
구조화 통화 옵션(Exotic FX Option): KIKO 등				
금리스왑(Interest Rate Swap)				
신용디폴트스왑(Credit Default Swap)				
상품 파생(Commodity Derivatives)				
기타 유형 : 서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래규모는 원화 또는 달러화로 표시합니다.

투자자 확인사항

본인은 귀사에 제공한 투자자정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합니다.

1. 귀사에 제공한 투자자정보는 본인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정확히 알려드린 것입니다.
2. 향후 24개월 동안에는 본인의 투자자정보가 변경되지 않는 것으로 귀사가 간주한다는 점을 설명 받았습니다.
3. 본인의 투자자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귀사에 통지하여야 귀사가 본인에게 적합한 투자권유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 받았습니다.

• 일자 : \_\_\_\_\_ • 고객의 성명 : 서명/인  
(대리인 거래시 대리인 성명 : 서명/인)

르네상스자산운용(주) 확인

이 확인서 내용은 르네상스자산운용이 투자자와 장외파생상품거래를 하기에 앞서 그 거래가 적절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파악한 정보입니다.

작성일자: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부서명)

(담당자)

서명/인

[별지 제5호]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산정기준

I. 목 적

- 동 기준은 「금융소비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상품 직접판매업자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설명하여야 할 사항 중 투자성 상품의 위험등급 산정과 관련하여 위험등급 산정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I. 위험등급 산정의 일반원칙

1. 적용대상 금융상품

- 일반금융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모든 투자성 상품으로 지분증권, 채무증권, 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신탁계약, 일임계약 등을 포함하되, 「금융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각 호의 상품\*을 제외한다.  
\* 연계투자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탁계약

2. 위험등급 산정의 주체

-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이하 '판매회사')는 「1. 적용대상 금융상품」에 포함되는 투자성 상품의 판매 전에 해당 상품의 위험등급을 산정한다.
- 판매회사가 정한 위험등급과 금융상품 제조회사가 정한 위험등급이 다를 경우, 판매회사는 제조회사와 위험등급의 적정성에 대해 협의한다.
- 판매회사는 금융상품 판매 시 당해 금융상품의 제조회사가 정한 위험등급을 사용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 위험등급을 판매회사가 정한 위험등급으로 사용할 수 있다.  
○ 단, 이 경우 판매회사는 제조회사가 정한 위험등급의 적정성을 확인하며, 그 절차와 방식 등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에 따른다.

3. 위험등급 체계

- 위험등급은 최소 6단계 이상으로 구분하고, 1등급을 가장 높은 위험으로 하며 그 수가 커질수록 위험도가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위험등급 구간별 명칭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매우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4. 위험등급 산정방식

- 판매회사는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고려하여 각 위험요소별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여 위험등급 산정시 반영하고, 그 밖의 구체적인 것은 'Ⅲ. 상품유형별 위험등급 산정기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 \* ①기초자산의 변동성, ②신용등급, ③상품구조의 복잡성, ④최대 원금손실 가능액, ⑤환매-매매의 용이성, ⑥환율의 변동성, ⑦그 밖에 원금손실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 ① 시장위험\* 등급은 투자성 상품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Ⅲ. 상품유형별 위험등급 산정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6단계(또는 그 이상)로 산정한다.
  - \* 기초자산의 변동성 등 시장가격 변동에 따라 상품의 가치가 변동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원금손실 위험을 통칭
- ② 신용위험\* 등급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 또는 외국에서 이에 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국제신용평가회사(이하 "신용평가회사")가 부여한 신용등급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 발행자의 채무불이행 등으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통칭
- 국내신용등급과 해외신용등급이 상이한 경우, 국내 신용등급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외 신용등급만 있는 경우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별표5] 35호 라목에 따라 국내 신용등급으로 전환할 수 있다.

<표1> 신용평가회사의 신용등급에 따른 신용위험등급 분류

구분	6등급(저위험)	5등급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고위험)
장기등급	국공채 등 <sup>주1)</sup> , AAA~ AA-	A+ ~ A-	BBB+ ~ BBB-	BB+ ~ BB-	B+ 이하 또는 무등급	
단기등급	A1	A2	A3	B 이하 또는 무등급		

- 1) 자본시장법 제118조의 규정에 따라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급보증 등으로 사채권에 비해 신용위험이 낮다고 인정되는 채무증권
- 2) 신용평가회사에 따라 등급 표시방법이 상이한 경우 상기 등급체계를 준용
- ③ 시장위험 등급과 신용위험 등급을 모두 산정하는 상품의 경우 「Ⅲ. 상품유형별 위험등급 산정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위험과 신용위험을 모두 고려한 종합 위험등급을 산정한다.
- ④ 외국통화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상품\*의 경우, 환율의 변동성 위험을 고려하여 종합 위험등급을 1등급 상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외화표시 파생결합증권, 외화표시 집합투자증권, 해외채권 등
- 다만, 해당 외국통화의 변동성이 매우 높아 투자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

우에는 2개 등급을 상향할 수 있고,

- 환율위험에 대한 헤지가 이루어져 환율의 변동성이 투자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히 줄어들거나 그 밖에 다른 방식으로 환율위험이 위험등급에 이미 반영된 경우 등 등급 상향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급을 상향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⑤ 유동성위험은 해당 상품의 중도환매 가능 여부 및 중도환매시 비용의 정도에 따라 '중도환매 불가', '중도환매시 비용발생', '중도환매 허용' 3단계로 구분하고, 관련 세부사항\*은 설명서(「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른 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별도로 기재한다.
  - \* 중도환매 시 발생하는 비용의 수준 등 환매의 용이성을 제한하는 요소 세부내역
- 또한 상품 구조상 중도 환매-매매 등에 제약이 없더라도 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이 존재하지 않거나 그 밖에 시장 상황에 따라 거래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환매-매매의 용이성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유동성위험에 관한 사항으로 설명서에 별도 기재한다.
- 판매회사는 상품의 특성에 따라 유동성위험의 중요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험등급에 직접 반영(등급 상향)할 수 있다.
- ⑥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7호에 따른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은 상기 위험등급 산출 방식에도 불구하고 2등급보다 낮은 등급을 부여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 \* 모든 위험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최종 위험등급이 2~6등급인 경우 2등급을 부여하고 최종 위험등급이 1등급인 경우 그대로 1등급 부여
- ⑦ 판매회사는 상품별 특성을 고려하여 기타 원금손실 등 상품의 위험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위험등급 산정시 반영할 수 있다. 또한 「Ⅲ. 상품별 위험등급 산정 기준」에 따라 인정된 위험등급이 실제 위험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험등급을 상향하는 등 조정할 수 있다.

5. 위험등급 산정 시기

- 위험등급은 해당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시점에 1회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시 판매 및 환매가 가능한 상품(예: 개방형 펀드)의 경우 연 1회(매년 결산시점) 등급을 재산정한다.
  - 다만, 재산정 주기가 도래하지 않더라도 시장상황 급변 등으로 특정 위험요소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거나 기타 현재 사용중인 위험등급이 시장 상황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판매회사의 판단에 따라 위험등급을 재산정할 수 있다.

6. 위험등급 관련 내부통제

- 판매회사는 신규 상품을 출시하고자 하는 경우 신규상품 출시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 해당 상품의 위험등급의 적정성 평가검토 절차를 반영하고 이미 판매중인 상품의 위험등급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7. 위험등급의 표시·설명 방법

- 판매회사는 금융상품의 위험등급(유동성에 관한 별도 등급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명함에 있어서 각 위험등급별로 다른 색상으로 나타내는 등 고객이 각 등급의 의미를 시각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표시한다.
  - 또한 위험등급 산정에 반영한 중요 위험요소 중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충실히 기재·설명한다.
- 판매회사는 위험등급에 관한 설명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위험등급의 의미와 유의사항, 해당 위험등급으로 정해진 사유를 함께 설명함으로써 투자자가 그 위험등급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III. 상품별 위험등급 산정 기준

1. 장내파생상품

- 장내파생상품은 투자원금을 초과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품의 특성을 감안하여 1등급(가장 위험도가 높은 등급)을 부여한다.
  - ※ 장외파생상품의 경우 일반투자자에게는 헤지 목적 거래만 허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별도 산정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 장외파생상품 위험도 분류 >

가. 주의 : 금리스왑, 옵션매수 (원금 초과 손실이 가능하나, 손실범위가 제한적인 상품)  
 나. 경고 : 통화스왑, 옵션매도, 선도거래 (손실범위가 무제한이나, 구조가 단순한 상품)  
 다. 위험 : 가, 나를 제외한 그 밖의 장외파생상품 (손실범위가 무제한이고, 구조가 복잡한 상품)

2. 집합투자증권

(1) 공모펀드

- 설정 3년 미만 펀드의 경우 <표2>에 따라 편입대상 자산의 상품군을 기준으로 위험등급을 분류한다.

<표 2> 설정 3년 미만 펀드의 상품군별 위험등급 분류

등급	국내투자 신규펀드 등급 분류기준
1등급 (매우 높은위험)	① 레버리지 등 수익구조가 특수하여 투자시 주의가 필요한 집합투자기구 ② 최대손실률이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2등급 (높은위험)	① 고위험자산에 8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3등급 (다소 높은위험)	① 고위험자산에 8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최대손실률이 20% 이하인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4등급 (보통위험)	① 고위험자산에 5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중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5등급 (낮은위험)	① 저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수익구조상 원금보존추구형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6등급 (매우 낮은위험)	①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② 단기 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1. “고위험자산”은 주식, 상품, REITs, 투기등급채권(BB+등급 이하),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2. “중위험자산”은 채권(BBB-등급 이상), CP(A3등급 이상), 담보부 대출 및 대출채권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3. “저위험자산”은 국공채, 지방채, 회사채(A-등급 이상), CP(A2-등급 이상), 현금성 자산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4. 상기 표에 정의된 자산 이외의 자산에 대해서는 달리 정할 수 있음
- 설정 3년 경과 펀드는 출시이후부터 등급산정 기준일까지의 최근 3년간 일간수익률을 토대로 <표3>에 따른 위험등급을 부여한다.

<표 3> 시장위험 등급 기준표(97.5% VaR 모형\* 사용)

	1등급 (고위험)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저위험)
97.5% VaR	50% 초과	50% 이하	30% 이하	20% 이하	10% 이하	1% 이하

- \* 과거 3년 일간 수익률에서 2.5퍼센타일에 해당하는 손실률의 절대값에 연환산 보정계수( $\sqrt{250}$ )를 곱해 산출
- 레버리지인버스 ETF\*는 VaR로 산출한 위험등급에서 1등급 상향한다.
-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의 변화에 1배를 초과한 배율로 연동하거나 음의 배율로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 과거 수익률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한 평가가 불가능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투자대상, 손실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설정한 기준에 따라 위험등급을 부여한다.
- 다만, 채권형 및 채권혼합형 펀드는 수익률 변동성에 신용위험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편입자산의 신용위험을 고려하여 위험등급을 상향할 수 있다.
- \* 장외채권이거나 매매시장에서의 유동성이 낮아 시가변동이 미미한 경우

□ 환율위험 및 유동성위험은 'II.위험등급 산정의 일반원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 사모펀드

□ 사모펀드는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공모펀드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모펀드와 동일한 방식으로 시장위험을 산출한다.

□ 공모펀드와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판매회사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별도의 위험등급 산정 기준에 따라 상품의 구조 등을 고려하여 위험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 다만, 별도 등급산정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가능한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등급 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 이 경우 별도로 산정된 위험등급은 2등급 이상으로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파생결합증권

□ (종합등급) 시장위험등급과 신용위험등급을 각각 산정한 후 <표4>에 따라 종합 위험등급을 산정한다.

<표4> 시장위험등급(MR)과 신용위험등급(CR)을 통한 종합 등급산출

구 분*	MR1 (고위험)	MR2	MR3	MR4	MR5	MR6 (저위험)
CR1(고위험)	1	1	1	1	1	1
CR2	1	2	2	2	2	2
CR3	1	2	3	3	3	3
CR4	1	2	3	4	4	4
CR5	1	2	3	4	5	5
CR6(저위험)	1	2	3	4	5	6

※ 주: MR은 시장리스크(Market Risk) 등급, CR은 신용리스크(Credit Risk) 등급

□ (시장위험) 기초자산 가격의 변동성, 기초자산 개수, 원금손실조건(낙인배리어 수준 등), 최대원금손실 가능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회사별로 상품의 특성을 반영하여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파생결합증권 평가 세부기준

□ 최대원금손실 가능금액이 20%를 초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2등급을 부여하고, 최대원금손실 가능금액이 20% 이하인 경우 원칙적으로 3~5등급을 부여

\* 원금 부분보장비율 수준에 따라 등급 세분화(95% 이상 5등급, 90% 이상 95% 미만 4등급, 80% 이상 90% 미만 3등급)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 1개 등급 상향

- (기초자산의 개수) 기초자산의 수가 3개를 초과하는 경우
- (기초자산의 종류) 특수한 형태의 기초자산에 연계되어 상품구조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가능성이 낮은 경우
- (기초자산 가격의 변동성) 과거 10년간 기초자산의 일간수익률의 연환산 표준편차가 일정 수준(예: 25%)을 초과하는 경우
- (원금손실조건) 낙인배리어(Knock-In Barrier)가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예: 60% 이상) 또는 낙인배리어가 없는 노낙인형 상품의 만기배리어 요건이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예: 70%)
- (레버리지 여부) 손실발생구간의 손실배수가 기초자산 변동률의 1배를 초과하는 경우

※ 그밖의 판매회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준을 추가로 설정하거나 조정 가능

□ 상장지수증권(ETN)은 1~2등급 내에서 상품의 구조, 기초자산의 변동성 등을 고려하여 등급을 분류하되,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등급을 부여한다.

\* 기초자산의 1배를 초과한 배율로 연동, 음의 배율로 연동, 해외지수·상품 또는 기타 특수한 형태의 기초자산을 추종하는 경우

○ 다만, 기초자산의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공모펀드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개별적으로 위험등급을 산정할 수 있다.

□ (신용위험) 발행사의 신용등급을 기초로 분류하되, <표1>의 기준을 준용한다.

□ 환율위험 및 유동성위험은 'II.위험등급 산정의 일반원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주식워런트증권(ELW)은 1등급(가장 위험도가 높은 등급)으로 분류한다.

4. 지분증권(주식 등)

□ 지분증권의 경우 원칙적으로 2등급을 부여하되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한 등급을 상향할 수 있다.

- 비상장 주식은 1등급 상향한다.
- 해외거래소 상장종목은 1등급 상향한다.
- 한국거래소의 투자주의·경고·관리종목은 1등급 상향한다.

5. 채무증권

□ 발행사의 신용등급, 보증여부 등을 고려하여 위험등급을 부여하되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최종 위험등급을 산정한다.

○ 회사채\*는 <표1>에 따라 신용평가회사의 신용등급을 고려하여 분류하되, 외부기관의 보증이 있는

경우 보증기관의 신용등급을 감안한다.

\* 「자본시장법」 제4조③ 및 ⑦ 제1호에 해당하는 사채권(파생결합사채) 포함

- 환율위험 및 유동성위험은 'II. 위험등급 산정의 일반원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반영하되,
  - 해외채권의 경우 해당국 통화의 종류에 따라 환율위험을 적극적으로 고려(위험등급을 0~2등급\* 상향)하고,
    - \* 변동성이 큰 신흥국 통화로 투자되는 경우와 같이 환율위험이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개 등급 상향 가능
  - 당해 채권이 유통되는 해외 시장의 특징 및 환매 또는 매매가 제한될 가능성 등 유동성위험에 관하여 보다 상세히 설명서에 기재한다.
- 조건부자본증권은 상각, 전환 위험 등 조건을 위험등급 산정시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특정금전신탁

- 특정금전신탁은 편입 대상 자산의 위험등급을 기준으로 신탁계약의 위험등급을 정하되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등급을 산정한다.
  - 단일 상품이 편입된 신탁계약(예: ELT)의 경우 편입 자산의 위험등급을 신탁계약의 위험등급으로 적용한다.
  - 신탁계약에 복수의 자산을 편입하는 경우 편입된 자산별로 위험등급을 부여하고 개별 편입자산의 위험등급을 설명한다.
  - 비지정형 신탁의 경우 신탁계약상 편입 가능한 투자대상 자산의 최고 위험등급을 해당 신탁계약의 위험등급으로 간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 헤지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편입하는 경우에는 신탁계약의 위험등급 산정시 해당 파생상품의 위험등급을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
    - \* 헤지 목적 파생상품의 범위는 금융투자업규정 제1-2조의4 ④ 후단(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 여부 판단시 제외하는 파생상품의 범위에 관한 규정) 준용

7. 투자일임계약

- 투자일임계약상 편입 가능한 투자대상 자산의 최고 위험등급을 해당 투자일임계약의 위험등급으로 간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다만, 사전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제시하고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 총 위험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상품의 경우, 포트폴리오내 개별 상품의 위험등급을 각 상품별 편입 비중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전체 투자일임계약의 위험등급으로 적용할 수 있다.

- 헤지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편입하는 경우에는 6. 특정금전신탁의 경우와 동일하게 일임계약의 위험등급 산정시 해당 파생상품의 위험등급을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

8. 기타

- 판매회사는 특정 투자성 상품에 대하여 이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계 법규 및 이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일반원칙에 부합하도록 합리적인 위험등급 분류 기준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위험등급을 산정할 수 있다.

IV. 보칙

- 이 기준은 '25.9.1일 이후 신규로 판매되는 금융상품의 위험등급 산정시부터 적용하고, 기존에 판매된 상품에 대해서는 '25.9.1일 이후 'II-5. 위험등급 산정시기'에서 정한 재산정 시점이 도래한 때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6호]

**적합성판단 기준(집합투자기구)**

1. 투자자 성형별 투자권유 가능상품 분류기준[집합투자증권]

구 분	1등급 (매우높은위험)	2등급 (높은위험)	3등급 (다소높은위험)	4등급 (보통위험)	5등급 (낮은위험)	6등급 (매우낮은위험)
이자소득형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안정투자선호형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혼합투자형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고수익채권형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주식펀드선호형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주식선호형	투자권유불가					
공격투자형						

권 유 가 능

2. 투자자유형별 자산배분유형 및 세부자산배분유형 분류

투자자 유형 자산배분 유형	고위험선호	저위험선호
유형군1 (주식)	주식 1 주식 2 주식 3 주식 4	
유형군2 (채권)	투기등급회사채, 주식관련사채(BW 등)	초우량 회사채, 국채
유형군3 (펀드)	주식형펀드, 파생상품형 펀드, 변동성이 큰 펀드	국공채형 펀드, 변동성이 작 은 펀드, MMF
유형군4 (이종자산)	주식, 파생상품, 투기등급회사채, 주식관련사채, 주식워런트, 원금보존형ELS(DLS), ELW, 이머징국가채권, 외화 주식	국채, MMF, 원금보존형 ELS

주식		채권		펀드	기타
국내	해외	국내	해외		
- 가치주 - 성장주 - 섹터주 - 대형/중소형주 - 코스닥주	- 선진국 - 이머징마켓 - 섹터 및 특정 지역 관련 주	- 국공채 - 회사채 - 하이일드채 - 후순위채 - 주식관련사채	- 국공채 - 회사채 - 하이일드채 - 후순위채	- 주식형 - 혼합형 - 채권형 - MMF - 재간접펀드 - 해외(선진/이머징)	- 구조화 상품 (원금보장/비보장) - 대체투자 등 (금,원자재,리츠 등)

**적합성판단 시준(장외파생상품)**

□ 르네상스자산운용은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의 적합성 판단 방식은 아래 사항을 추가로 참고하여 투자권유 기준을 정합니다.

1. 만 65세 이상이고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경험이 1년 미만인 일반투자자인 개인에게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회피목적의 장외파생상품만 투자권유할 수 있다.

- 가. 금리스왑
- 나. 옵션매수

2.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경험이 3년 미만인 주권 비상장법인 및 개인사업자,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경험이 1년 미만인 주권상장법인과 만 65세 미만이고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경험이 1년 미만이거나, 만 65세 이상이고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경험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일반투자자인 개인에게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회피목적의 장외파생상품만 투자권유할 수 있다. 다만, 회사가 위험관리능력 및 장외파생상품 투자경험,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지식수준 등이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투자자(일반투자자인 개인은 제외)에 대하여는 각 목 부터 다 목 이외의 위험회피목적의 장외파생상품도 투자권유할 수 있다.

- 가. 금리-통화 스왑
- 나. 옵션 매수-매도
- 다. 선도거래

구분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 경험			
	1년 미만	1년 이상 ~ 3년 미만	3년 이상	
개 인	만 65세 이상	금리스왑 옵션매수	금리스왑, 통화스왑, 옵션매수, 옵션매도, 선도거래	기타 위험회피 목적의 모든 장외파생상품
	만 65세 미만	금리스왑, 통화스왑, 옵션매수, 옵션매도, 선도거래	기타 위험회피 목적의 모든 장외파생상품	
법인 및 개인사 업자	주권 비상장법인, 개인 사업자	금리스왑, 통화스왑, 옵션매수, 옵션매도, 선도거래	기타 위험회피 목적의 모든 장외파생상품	
	주권 상장 법인	금리스왑, 통화스왑, 옵션매수, 옵션매도, 선도거래	기타 위험회피 목적의 모든 장외파생상품	

\* 장외파생상품의 위험도 분류  
 주의: 금리스왑, 옵션매수 (원금 초과 손실이 가능하나, 손실범위가 제한적인 상품)  
 경고: 통화스왑, 옵션매도, 선도거래 (손실범위가 무제한이나, 구조가 단순한 상품)  
 위험: 1), 2)를 제외한 그 밖의 장외파생상품 (손실범위가 무제한이고, 구조가 복잡한 상품)

[별지 제7호]

**투자성향에 적합(적정)하지 않은 투자성 상품 거래 확인**

- 동 확인서는 투자자가 본인의 투자성향에 적합(적정)하지 않은 투자성 상품에 대한 거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투자자는 아래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읽고 필요한 확인 절차를 거쳐주시기 바랍니다.
- 동 확인서는 향후 분쟁 또는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 귀하의 권리구제에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의사항**

1. 투자자성향 대비 위험도가 높은 투자성 상품 가입시 금융회사는 투자권유를 할 수 없으므로 본인 판단 하에 투자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2. 귀하께서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금융회사는 '적합성 원칙' 준수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 적합성 원칙(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 : 투자자의 재산상황, 금융상품 취득·처분 경험 등 정보를 파악하고, 투자자에게 부적합한 금융상품의 계약 체결 권유를 금지
3. 귀하께서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거나 설명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 금융회사는 '설명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 설명의무(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 금융상품의 중요사항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4. 투자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 손익에 대한 책임은 모두 고객에게 귀속됩니다.
5. 투자자성향 대비 고위험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예상보다 더 큰 폭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귀하께서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더라도 '적정성 원칙' 대상 투자성 상품을 가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융회사는 면담·질문 등을 통해 해당상품이 귀하에게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평가결과 및 그 사유를 기재한 적정성 판단 보고서를 제공하고 있으니 이를 충분히 검토하고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 \* 적정성 원칙(금융소비자보호법 제18조) : 투자자가 자발적으로 구매하려는 금융상품이 투자자의 재산 등에 비추어 부적절할 경우 그 사실을 투자자에게 고지하고 확인할 의무

**투자자 확인사항**

적합(적정)성 진단 결과	투자자 성향	(                    )
	투자성 상품의 위험 등급	(                    )

☞ 괄호안 부분은 자필기재(하단 표를 참조하여 해당하는 명칭 기재)

※ 투자자성향별 적합한 투자성 상품

투자자 성향	공격 투자형	주식 선호형	주식펀드 선호형	고수익 채권형	혼합 투자형	안전투자 선호형	이자 소득형
투자성 상품의 위험 등급	매우 높은위험	높은위험	다소 높은위험	다소 높은위험	보통위험	낮은위험	매우 낮은위험

• 일자 : \_\_\_\_\_

(대리인 거래시 대리인 성명 : \_\_\_\_\_)

• 고객의 성명 : \_\_\_\_\_

(대리인 거래시 대리인 성명 : \_\_\_\_\_)

서명/인 \_\_\_\_\_

서명/인 \_\_\_\_\_

※ 위 표의 공란은 자필기재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8호]

**적합성 보고서**

고객명:	고객번호:													
<b>■ 투자정보 확인서 조사결과</b>														
1. 고객연령대:	2. 투자예정기간:													
<b>■ 고객의 투자성향 및 투자권유 상품</b>														
투 자 성 향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 style="width: 10%; padding: 5px;">투자성향</th> <th style="padding: 5px;">투자성향 특징</th> </tr> <tr> <td style="padding: 5px;"><input type="checkbox"/> 공격투자형</td> <td rowspan="6" style="padding: 5px; vertical-align: middle;">※ 회사가 분류한 투자성향의 정의</td> </tr> <tr> <td style="padding: 5px;"><input type="checkbox"/> 주식선호형</td> </tr> <tr> <td style="padding: 5px;"><input type="checkbox"/> 주식펀드선호형</td> </tr> <tr> <td style="padding: 5px;"><input type="checkbox"/> 고수익채권형</td> </tr> <tr> <td style="padding: 5px;"><input type="checkbox"/> 혼합투자형</td> </tr> <tr> <td style="padding: 5px;"><input type="checkbox"/> 안정투자선호형</td> </tr> <tr> <td style="padding: 5px;"><input type="checkbox"/> 이자소득형</td> <td style="padding: 5px;"></td> </tr> <tr> <td style="padding: 5px;">투자권유 상품</td> <td style="padding: 5px;">※ 상품명</td> </tr> </table>	투자성향	투자성향 특징	<input type="checkbox"/> 공격투자형	※ 회사가 분류한 투자성향의 정의	<input type="checkbox"/> 주식선호형	<input type="checkbox"/> 주식펀드선호형	<input type="checkbox"/> 고수익채권형	<input type="checkbox"/> 혼합투자형	<input type="checkbox"/> 안정투자선호형	<input type="checkbox"/> 이자소득형		투자권유 상품	※ 상품명
투자성향	투자성향 특징													
<input type="checkbox"/> 공격투자형	※ 회사가 분류한 투자성향의 정의													
<input type="checkbox"/> 주식선호형														
<input type="checkbox"/> 주식펀드선호형														
<input type="checkbox"/> 고수익채권형														
<input type="checkbox"/> 혼합투자형														
<input type="checkbox"/> 안정투자선호형														
<input type="checkbox"/> 이자소득형														
투자권유 상품	※ 상품명													
<b>■ 투자권유 사유 및 핵심 유의사항</b>														
투 자 권 유 사 유	※ 투자자 수요를 감안하여 해당상품을 선정한 핵심적 사유를 기술													
핵심 유의사항	※ 고객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유념하여야 할 사항이나 불이익을 기재													
<b>■ 참고사항</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자료는 고객이 제공한 정보 및 투자관련 요구사항 등을 근거로 작성되었으므로, 상이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 수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li> <li>○ 핵심 유의사항은 해당 상품의 특성 또는 고객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가장 유의가 필요한 사항만을 기재한 것으로 일반적인 위험내용 등은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li> </ul>														
작성일자:	작성자 성명:													

[별지 제9호]

**고령투자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보호 기준**

**제1조(목적)** 본 기준은 르네상스자산운용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고령투자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준수하여야 하는 일반적 절차 및 유의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령투자자 보호 필요성)** 고령투자자는 일반적으로 신체적인 쇠약과 더불어 기억력과 이해력이 저하될 수 있어 각별히 유의할 필요성이 있고, 대부분의 고령투자자들이 별도의 소득원이 없으며 잔여투자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손실이 발생할 경우 생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최근 금융투자상품이 구조화·첨단화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이해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투자자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제3조(고령투자자의 정의)** 회사는 만 65세 이상을 고령투자자로 정의하고, 그 중 만80세 이상은 보다 강화된 판매절차를 적용하는 초고령투자자로 정의한다.

**제4조(고령투자자 보호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 ① 회사는 고령투자자의 특성에 부합하는 상담과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령투자자 전담창구를 설치한다.

② 회사는 고령투자자 보호 정책을 마련하고, 판매 프로세스 개선 및 임직원에게 교육 등을 수행하는 본사 내 전담부서 및 전담직원을 지정한다.

③ 회사는 구조가 복잡하고 가격변동성이 크거나 환금성에 제약이 있는 금융투자상품을 “투자권유 유의상품”으로 지정하고, 지정 금융투자상품을 권유하는 경우 강화된 판매절차를 적용한다.

④ 회사는 고령투자자에게 “투자권유 유의상품”을 권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회사는 임직원이 고령투자자에게 “투자권유 유의상품”을 권유하는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관리직 직원(준법감시담당자 등)이 권유의 적정성을 사전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관리직 직원은 고객과의 직접적 면담(투자권유시 배석 등) 또는 전화를 통해 고객의 이해여부 및 투자권유의 적정성 등을 사전 확인하고 확인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3. 관리직 직원이 사전 확인한 결과, 고객의 사리분별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상품을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 체결을 중단하여야 하고, 상품이 고객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과 회사가 투자권유할 수 없는 상품이라는 점을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투자권유 유의상품”에 해당하는 신상품 개발시 고령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만일, 고령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설명서, 회사 판매정책에 반영한다.

⑥ 회사는 다른 회사가 개발한 “투자권유 유의상품”에 해당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고령투자자 보호 측면을 살펴보고, 고령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회사 판매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⑦ 회사는 65세 이상인 고령투자자를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은 제외)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과정을 녹취하고 투자자가 요청하는 경우 녹취한 파일을 제공하여야 하며, 판매과정에서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5조(고령투자자 보호 관련 내부통제 강화)** ① 회사는 고령투자자 응대방법 및 강화된 판매 프로세스 등을 담은 내규를 제정하여야 하며, 임직원 대상으로 실시되는 각종 교육을 통해 내규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감사부서 또는 준법감시부서 등을 통해 고령투자자에 대한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은 거래를 추출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기록을 남겨야 한다.

③ 고령투자자의 경우 신변 또는 건강상태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고령투자자로부터 사전에 조력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연락처를 확보해둘 필요가 있다.

④ 고령투자자를 주요 대상으로 각종 설명회·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 고령투자자를 현혹할 수 있는 허위·과장정보, 투자광고물이 사용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6조(초고령자에 대한 추가 보호방안)** ① 회사는 초고령자에게 구조가 복잡하고 가격변동성이 크거나 환금성에 제약이 있는 “투자권유 유의상품”에 해당하는 상품을 투자권유하는 것은 자제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초고령자에게 판매가 부적절한 상품으로 설명서 또는 회사 판매정책에 반영된 상품을 투자권유할 수 없고, 임직원의 투자권유가 없는데도 고객이 매수를 원하는 경우에도 고객에게 적합하지 않은 상품임을 설명하는 등 판매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

③ 회사는 초고령투자자에게 “투자권유 유의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가족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초고령투자자가 가족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없거나 가족 등에게 투자사실을 밝히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족 등을 대신하여 관리직 직원이 동석하여 초고령투자자를 조력할 수 있고, 초고령투자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⑤ 회사는 초고령투자자가 가족 등의 조력이나 관리직 직원의 동석을 통한 조력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영업점 이외의 장소에서 투자권유가 이루어지는 경우 또는 비대면 방식의 투자권유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초고령투자자에게 충분한 투자숙려기간(2영업일 이상)을 부여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⑥ 회사는 초고령투자자가 “투자권유 유의상품”에 투자한 경우 해피콜 등을 통해 사후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상담내용 등의 기록·유지)** 회사는 향후 분쟁 등에 대비 고령투자자와의 상담내용 등을 녹음·녹화하거나 판매직원 또는 관리직 직원이 기록·유지하도록 한다.

**[별지 제10호]**

**청약 철회 요청서**

**■ 고객 정보**

고객명 :	생년월일 :
주 소 :	

**■ 청약 철회 대상**

- (투자성 상품) 고객은 청약철회가 가능한 대상상품에 대하여, 아래 1) 또는 2)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7일**(고객과 회사간 이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 그 기간) 이내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고객이 예탁한 금전 등을 **지체없이 운용하는데 동의한 경우에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청약의 철회는 고객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게 서면 등을 발송할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청약철회 대상 상품 :	<input type="checkbox"/> 투자성 상품 :
1) 계약서류 제공받은 날:	_____년 ____월 ____일
2) 계약 체결일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서류를 제공받지 아니한 경우)	_____년 ____월 ____일

**■ 주의 사항**

- 본 신청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고객이 회사에 대하여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입니다.
- 고객은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로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그 발송 사실을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작성일자 : \_\_\_\_\_년 \_\_\_\_월 \_\_\_\_일

신청인 : \_\_\_\_\_ (서명/인)

## [별지 제11호]

위법계약 해지 요구서

<b>■ 고객 정보</b>	
고객명 :	생년월일 :
주 소:	
<b>■ 고객의 계약해지 사유</b>	
계약해지 대상 상품명 :	
계약체결일 :	
계약해지 사유 :	<input type="checkbox"/> 적합성 원칙 위반 (금소법 §17③) <input type="checkbox"/> 적정성 원칙 위반 (금소법 §18②) <input type="checkbox"/> 설명의무 위반 (금소법 §19①, ③) <input type="checkbox"/> 불공정영업행위 (금소법 §20①) <input type="checkbox"/> 부당권유금지 위반 (금소법 §21)
<b>■ 계약해지 사유의 근거</b>	
증빙자료	※ 예시: 별도첨부 1), 2), 3)
참고자료	※ 예시: 별도첨부 1), 2), 3)
<b>■ 안내 사항</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신청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고객이 회사와 체결한 위법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입니다.</li> <li>○ 회사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고객의 해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li> </ul>	
작성일자 : _____년 ____월 ____일	
신청인 : _____ (서명/인)	

## [별지 제12호]

위법계약 해지 요구 관련 통지서

<b>■ 통지 대상 고객</b>	
고객명 :	생년월일 :
주 소:	
<b>■ 회사의 통지 결과</b>	
고객의 계약해지 사유 :	<input type="checkbox"/> 적합성 원칙 위반 (금소법 §17③) <input type="checkbox"/> 적정성 원칙 위반 (금소법 §18②) <input type="checkbox"/> 설명의무 위반 (금소법 §19①, ③) <input type="checkbox"/> 불공정영업행위 (금소법 §20①) <input type="checkbox"/> 부당권유금지 위반 (금소법 §21)
회사의 판단 결과 :	<input type="checkbox"/> 고객의 위법계약 해지 수락 <input type="checkbox"/> 고객의 위법계약 해지 거절
(거절시) 회사의 정당한 사유:	※ 구체적으로 사유 기재
(거절시) 정당한 사유의 객관적·합리적 근거	※ (설명 의무 위반시, 위반이 없다는 객관적·합리적 근거) 별도 첨부 가능
<b>■ 안내 사항</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사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고객의 해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li> </ul>	
_____년 ____월 ____일	
르네상스자산운용(주)	

[별지 제13호]

**로보어드바이저 투자자 유의사항**

1. 로보어드바이저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한 알고리즘 및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투자자의 성향에 맞는 투자자문·운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자산관리서비스입니다.
2. 로보어드바이저는 평균적인 가정을 기반으로 제시되는 투자조언으로서 금융시장의 모든 변수를 반영하지 못하며, 시장상황 등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해 실현된 기존의 수익률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3. 로보어드바이저는 투자자 성향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자문이 이루어지므로 효율적인 투자자문을 위해서는 투자자의 정확한 답변이 중요하며,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답변은 잘못된 운용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투자자는 알고리즘의 특징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에 임해야 합니다
4. 테스트베드\*는 로보어드바이저 알고리즘의 합리성, 법규 준수성, 시스템의 안정성 등을 확인하는 절차로서, 알고리즘의 수익성 및 품질을 검증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 \* 분산투자, 투자자성향 분석, 해킹방지체계 등 투자자문·일임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율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 이에 따라, 테스트베드를 통과한 로보어드바이저가 테스트베드를 통과하지 않은 로보어드바이저에 비해 안정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을 수 있으나, 반드시 더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5. 로보어드바이저의 자문·일임과정에 사람의 개입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시장상황의 급변 등 필요시에는 투자운용인력의 판단이 개입될 수 있습니다.